	내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문서번호: LAS-A0-06-10 개정일자: 2022. 8. 18 개정번호: 5	
		페이지	1 / 5

1. 목적

이 규정은 롯데알미늄(이하 “회사” 라 한다)의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실천사항

2.1 기본원칙

이 규정은 회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 • 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2 내부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용 실천사항

2.2.1 내부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2)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위원장	1)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침을 설정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 3) 의결이 가부동수 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	1)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다. 2)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 또는 설명할 수 있다.
간사	1) 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회의록의 작성 및 관계서류 보관과 처리 사항에 대한 위원장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2.2.2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는 서면 결의로 “안건 없음” 이라고 기록 관리한다
- 2) 내부 심의위원회는 회사의 직접사업연도 하도급거래 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 사업연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하도급거래 금액	비율
1,000억원 미만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2%
1조원 이상	1%

적법성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 가.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나.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마.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바.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여부
-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 •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5)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문서번호: LAS-A0-06-10 개정일자: 2022. 8. 18 개정번호: 5	
		페이지	3 / 5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 7)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의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위임

위원장은 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규정 이외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시행일

- 이 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0)
-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1) 조직개편에 따른 확인작업
- 이 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 조항신설
-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3) 조직개편 및 확인작업
- 이 규정은 2022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4) 조직도 추가
- 이 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5) 개정사항 반영

NOTE 정보보안

1. 본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한다.
2. 본 문서는 지정 배포된 팀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3. 본 문서는 문서관리 담당자 외 복사를 금한다.

	내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문서번호: LAS-A0-06-10 개정일자: 2022. 8. 18 개정번호: 5	
		페이지	4 / 5


[별첨 1] 회의록

회의록

결	간 사	위원장
재		

회의구분	제 회	회의일시			
장 소		참석인원	명중	명 참석	
안 건					
심의내용 (검토내용)					
결의내용					
참 석 위 원					
팀	성 명	날 인	팀	성 명	날 인

본 회의록의 내용을 인정 및 합의함.

	내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문서번호: LAS-A0-06-10 개정일자: 2022. 8. 18 개정번호: 5	
		페이지 5	5

[별첨2] 내부심의위원회 조직도

